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

2016.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 청탁금지법 · 시행령 주요 내용	1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3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4
II . 법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방송통신분야)	5
1. 법 적용 대상기관	7
2. 법 적용 대상자	8
【붙임 1】 방통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현황	13
【붙임 2】 청탁금지법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17
III . 부정청탁 금지	23
1. 자가진단 Check List	27
2.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31
3. 부정청탁의 대응	54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55
IV . 금품등의 수수 금지	75
1. 선물 등 수수 금지	78
■ 자가진단 Check List 및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80
■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86
2. 음식물 등 수수 금지	91
■ 자가진단 Check List 및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93
■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98
3. 경조사비 등 수수 금지	100
■ 자가진단 Check List 및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102
■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107
V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31
1.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133
2.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35
3. 위반에 대한 제재	138
【참고】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안 2단 비교표	143

「청렴하고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 8대 생활수칙

◇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렴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통위 8대 생활수칙 방안을 마련

1 내가 먹은 음식 값은 내가 계산하기

2 업무 관련자와 선물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기

3 업무 관련자와 비공개 접촉은 피하고, 청탁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기

4 의심스러운 청탁·금품수수 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기

5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Everyday 가정의 날 실현하기

6 탄력근무로 직원 행복 높이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7 121 가족사랑 실천하기

- 매일 1회 이상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얘기 하세요.
-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세요.
-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문화공연을 함께 하세요.

8 이런 말은 안돼요!

- (갑작스런 회식 제안과 함께) 저녁만 먹고 가!
- (휴가 결재시) 휴가가서 뭐 할려고?
- (퇴근하며 업무주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
-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김주무관, 승진안할 꺼야! 등

I . 청탁금지법 · 시행령 주요 내용

I

청탁금지법 · 시행령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목적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적용대상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금지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등 ▶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	금품등 수수 금지 등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
처리절차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제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장치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제13조, 제14조) ▶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제15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 부당이익의 환수(제17조)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과태료 및 형벌(제21조~제24조)	
기타	▶ 공직자등의 의무(제4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1조)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제12조) ▶ 비밀누설 금지(제18조) ▶ 교육과 홍보 등(제19조)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제20조)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부정청탁 금지 등	▶ 부정청탁의 신고방법(제3조)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4조)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방법(제5조)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금품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제7조) ▶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제8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기준 등(제9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제10조)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11조)
	▶ 제공자에게 금품등,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비용의 청구(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신고내용의 확인 등 및 의견청취등(제13조·제14조) ▶ 신고의 이첩,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제15조·제16조·제17조) ▶ 조사기관의 처리,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제18조·제20조·제21조)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19조) ▶ 수사기관의 수사 등(제22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방법(제23조) ▶ 징계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제29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0조)	
보호·보상 등	▶ 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2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5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26조)	
공공기관 운영 지원	▶ 윤리강령(제2조) ▶ 교육(제27조)	

Ⅱ. 법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 방송통신분야 -

II

법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방송통신 분야)

1 법 적용 대상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15.12.31. 기준 17부5처16청2원5실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16.6.30. 기준 982개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321개) 중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제외한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다.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함
- (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즉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즉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함
- MBC, SBS, 동아·조선·중앙 일보 등과 같은 설립목적 및 주된 업무가 언론인 고유한 언론사 외에도,
 -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함
- 고유한 언론사인지 여부는 설립목적 및 주된 업무가 언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무는 근로자 비율, 임금총액 비율, 매출액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2 법 적용 대상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

- 임기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 직원이라 함은 근로계약 형태 및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소속 직원을 의미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 출연계약,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단체 소속 구성원이나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마목)

□ 개 요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공적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 언론사의 대표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

□ 언론사의 임직원

-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
-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취재·보도·편집 등의 언론사 고유의 직무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단순 노무 등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 인턴기자과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되고,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직원에 포함

-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라. 기타

(1)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2)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일반인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3)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주 의

-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방통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현황

('16. 8월 현재)

구분	청탁금지법	대상	법령 조문	비고
공무원	제2조제2호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제2조제2호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한국교육 방송공사 (중복) 방송문화진흥회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2016.6.30)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다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재단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2016.1.29)	
언론사	제2조제2호마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지상파 등 54개 방송사업자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공무수행사인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②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 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방송분쟁 조정위원회 (중복)	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분	청탁금지법	대상	법령 조문	비고
공무수행사인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법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중복)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중복)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감사자문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구분	청탁금지법	대상	법령 조문	비고
공무수행사인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심의 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통령령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청탁금지법	대상	법령 조문	비고
공무수행사인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대상 미지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5명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대상없음		

청탁금지법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16. 8월 현재)

구분		세부 내역	계
지 상 파 (48 개사)	TV · Radio 동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주),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주)엠비씨경남, 춘천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주)엠비씨강원영동, 목포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주)SBS,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지원(G1), (주)제주방송	30개
	TV 단독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1개
	Radio 단독	(주)경기방송, (주)경인방송(iFM),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시교통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 (주)YTN라디오	14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3개
종 편·보도 전문PP(6개사)	종편PP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6개
	보도PP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방통위 소계			54개

< 국가기관 >

Q.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권익위)

-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음.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Q.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Q.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권익위)

-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Q.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직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므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Q.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권익위)

☞ 언론사 임직원의 신분을 가지는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Q.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 (매일경제)

☞ 그렇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과 직무연관성이 성립될 수 있다.

Q.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한경비즈니스)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부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 공직유관단체 >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 인지? (권익위)

☞ 직원이라 함은 근로계약 형태 및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소속 직원을 의미.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을 겸직(공공기관 사외이사)하고 있는 경우 민간 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권익위)

☞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공무수행사인 >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권익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권익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권익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장소적 적용범위>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권익위)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속지주의)

Q.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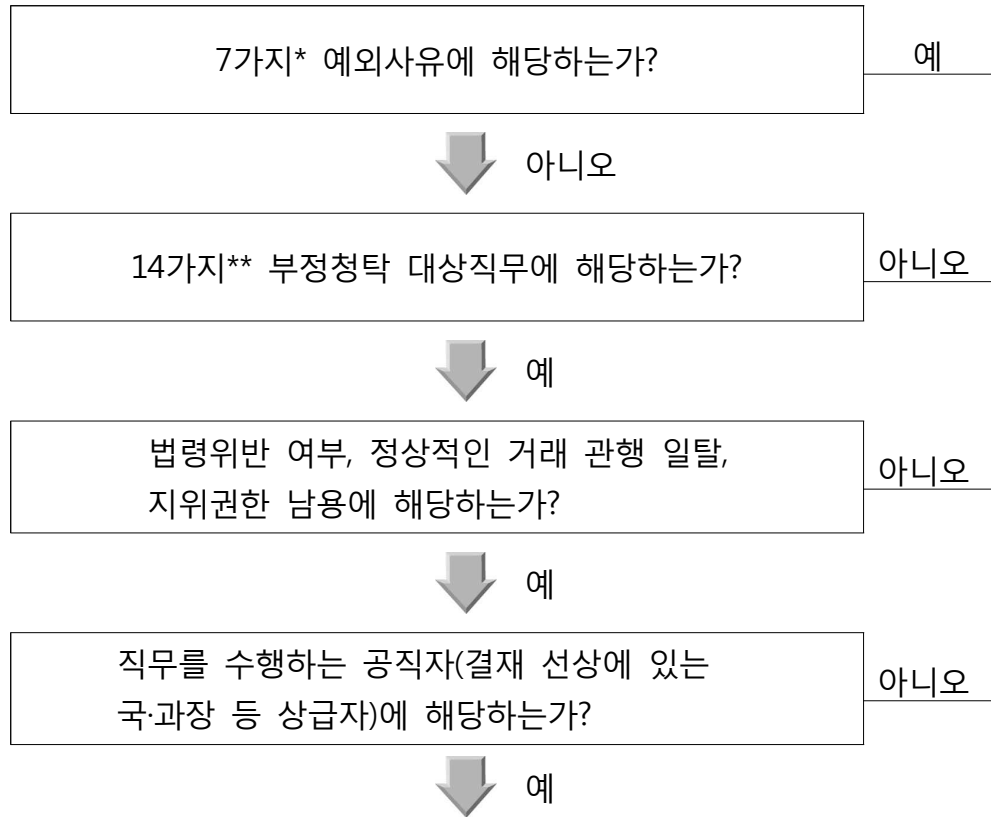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Ⅲ. 부정청탁 금지

III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여부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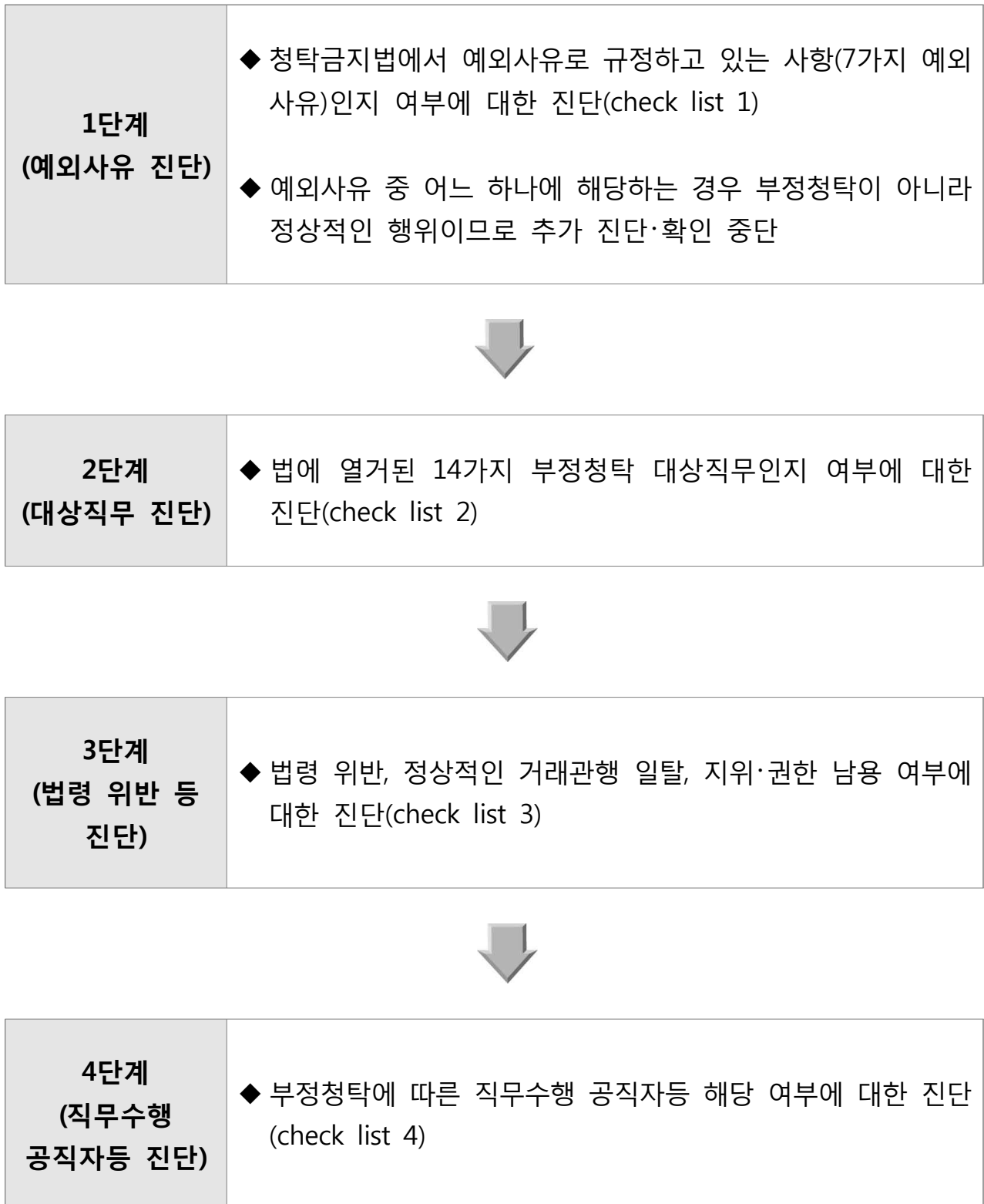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 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에
저촉
안됨

* 7가지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2. 공개적으로 요구, 3.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전달, 4. 기타 법정기한내 처리요구,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4개 부정청탁 유형 : 1. 인·허가 등 처리관련, 2.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3. 인사 개입 등,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련 직위·선정·탈락, 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11.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12. 각종 평가·판정결과 조작, 13. 행정지도, 단속·감사결과 조작·묵인, 14.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 부정청탁 확인 절차도 >



※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Check List 2~4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Check List 1

- 'Check List 1' 부정청탁 예외사유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체크	체크 항목
☐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2~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고, 체크(√)가 없는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애매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2

○ 'Check List 2'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3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
☐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직무
☐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직무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직무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3~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3

○ 'Check List 3'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의 남용(첨부 3 참조)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

구분	체크	체크 항목
법령 위반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4

- 'Check List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중 어느 하나에 체크(✓)를 하면 자가 진단 완료

체크	체크 항목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등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진단 완료



- ◆ check list 2, check list 3, check list 4에서 모두 체크(✓)가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정청탁이 성립
- ◆ 예외사유(특히 사회상규) 등 자가진단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 방지담당관과 상담

2 부정청탁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Check List 1의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 부정청탁 예외사유 >

체크	체크 항목
☐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부정청탁 예외사유의 진단 >

○ 법 제5조제1항은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제2항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를 열거

※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제5조제1항(금지규정)과 제2항(법 적용제외 규정)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이는 예외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와 관련됨

-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 상 제2항은 제1항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 필요

※ 제2항을 제1항과 연관성이 있는 규정으로 보면 제2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그 내용이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가능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국민과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
 - 공직자등이 민원인과의 상담을 기피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에 대비
- 예외사유가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을 구비한 경우 요구내용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요구 내용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부정청탁은 밀행성(密行性)이 전제되므로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행위 상황의 공개성 확보)를 의미
-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
- 제2호의 예외사유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요구(형식적 요건)하는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③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 대상(고충민원 등), 행위(전달)의 제한을 받는 예외사유
- (주체)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고,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고충민원과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것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행위)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

※ 전달·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에 해당

④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는 예외사유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해석 요구도 예외사유

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

※ ‘사회상규’는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 제5조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음

-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회상규 위배 여부 자가진단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Check List 2의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체크	체크 항목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
☐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직무
☐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직무
☐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직무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직무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①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o 제1호 대상직무의 유형

- (인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상 골재 채취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 (면허)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처분 내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것

※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등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 각종 사업면허 등

- (특허)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실정법상 면허·허가 등)

※ 특허기업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권·어업권,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등

- (승인) 인가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예컨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에 해당

※ 건설·건축 부문에서의 개발관련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산업·경영 분야에서 사업·공사계획 승인, 안전과 관련한 형식 승인 등

- (검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

※ 품질·기기·시설물·수질 등 안전성 확보 검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설 준공 후 검사

- (검정)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과 같이 인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를 위해 주로 규정

- (시험) 자재 등 물품 등의 적격시험, 농약 등 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
기타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각종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등
- (인증)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행위
 - ※ 인증은 크게 품질·기술 등 인증, 기업·사업장 인증, 사업자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확인)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 ※ 당선인 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 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

②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제1호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이나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 등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
 - ※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항만법), 특정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도로법, 항만법) 등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을 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민사상 과태료(민법상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

-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이행강제금)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
 -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강제금, 토지(시설) 이용 행위에 대한 강제금,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강제금 등
- (범칙금)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특별한 과형절차(통고처분절차)
 -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등
- (징계) 민간 자격소지자에 대한 징계, 초·중고·대학 학생 및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 국가 위탁사무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일반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③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채용	• 공무원등의 채용관련 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 추천, 채용권자 등 관련
승진	• 승진임용 예정인원, 승진 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 심사 절차 등 관련
전보	• 전보제한 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 제한 등 관련
징계	• 징계 사유, 절차, 직권 면직 요건, 징계권자, 소청 제도 등 관련
시험	• 임용과 승진 시험의 시험과목, 실시 방법, 시험 면제, 합격 결정 등 관련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심의·의결·조정 위원회) 심의·의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자문위원회는 해당하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위원회 및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다수
 -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 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위탁기관의 경우 수탁사무에 대한 심의적 성격의 기구

< 각종 위원회 현황 >

구분	설치기구
중앙 행정기관	• (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저작권심의위원회 등
지방 자치단체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공직 유관단체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국민연금 징수심사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회 등
위임 위탁기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 조정 관련 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가능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학교 관련 위원회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등

- (시험·선발 위원) 각종 국가자격시험 위원 또는 제5호의 각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우수기관·우수자 등의 선발위원 선정 업무

※ 공무원 임용시험 위원,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변호사·행정사 등 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 등

⑤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

- (포상) 포상은 크게 산업분야, 체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

※ 지자체의 경우 주민 중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상(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이 많고, 농업·어업·축산 등 각 분야의 개인·단체 대상 포상이 많으며, 교육 분야는 장학·선발이 많음

- (선발) 대부분이 장학관련 분야이고 기업분야 우수자 선발·지원, 임업후계자 지원 등이 있음

- (수상) 지자체 조례·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전국과학전람규칙 (수상작품 시상), 올림픽기장령 (올림픽기장 수여), 문화예술진흥법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업적이 현저한 자 시상), 국가유공자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문화상 시상)

- (선정) '선정'은 대부분 우수기업 등을 발굴·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대부분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⑥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

※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과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 (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제8조

- (경매)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경매(공경매)와 사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사경매)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법 제23조제3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사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율됨

- (개발)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공사에 대해 '개발'의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금융정보 등의 제공 관련 정보 누설 금지, 「항만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등

- (군사) 군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군사상 비밀유지, 군사작전 보호 등의 기밀 유지의무를 부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징발법 등

- (특허) '특허'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는 특허청의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 등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무 부과

- (시험) 각종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상 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탁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 (과세) 과세와 관련한 금융정보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 부과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부정청탁행위 유형과 달리 '계약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방위사업법」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⑧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민간이전(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장려금) 취업·고용 장려금, 연구·개발 장려금, 정책적 장려를 위한 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음
 - ※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지자체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음
-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 (교부금)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임
 - * 보통 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 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그 외 특정한 행정목적에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지도 담당 단체에 교부금 지급 등이 있음
- (기금)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⑨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매각) 정부재산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 간척지·공적자금 등 정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매각, 기타로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매각 등이 있음
 - ※ 「국유재산법」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신탁법」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 (교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국유재산법」상 토지·건물 등의 정착물, 동산 교환, 「공익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교환, 「소하천정비법」상 폐천부지 등의 교환 등
-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타 주파수 공동사용 등
- (수익) 법률로 설립한 공제회·재단·연구원·단체·시설 등의 수익사업, 선수권 대회나 국제대회 등과 관련한 회장 등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 (점유) 무단점유 금지, 무단점유 시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 등

⑩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⑪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징병검사의 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입영기일 연기 등
-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 (보직부여)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의 보직 및 해임, 「병역법」상 병력동원 소집의 후순위 조정 등

⑫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 공공기관 대상 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 민간부문 대상 평가는 평가를 통해 시장질서 형성,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 배상·보상 관련 평가, 등급 부여 평가 등
 - 공공부문 대상 평가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의 효과성 검증, 지원 수준 결정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 평가, 「산재보험보상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지가 산정평가 등
- (판정) 등급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정, 각종 시험·검사의 합격여부 판정, 기타 행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판정으로 나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⑬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 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속 등
 -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미분류 게임물·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 (조사) 법령 준수 또는 위반행위의 확인,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법령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사 등
 -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실태조사 등
- (감사) 국회·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그 외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

⑭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들을 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의 경우도 포함
- (재판) 각급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포함
 -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 직무를 포함
- (심판) '심판'은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 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이 있음
- (결정)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을 의미
 -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석방 적격결정 등

○ (조정·중재)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 등

○ (화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 「중재법」상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의 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 등



Check List 3의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 법령 위반 등 >

구분	체크	체크 항목
법령 위반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	◆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①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청탁금지법 제4조의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와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의무도 포함

※ 청탁금지법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등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판례는 국세청장 훈령형식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86누484), 지방자치단체장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2000두7933)등에 대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예시) >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 지침에서는 조직·인력 운영, 인사운영, 예산 및 자산 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사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 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그 외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제5항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도 포함

○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을 의미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과 관련한 부정청탁행위(제7호)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

- '계약 관련'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이상 법령의 분야를 계약 관련 법령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

○ 국가계약법 등과 같이 계약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외에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

※ (예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지위·권한의 남용

- 청탁금지법 제5조제15호에서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
- 즉,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아닌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행위를 보충적으로 규정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령에서 직접 지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업·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지위·권한도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사무와 관련한 지위·권한을 벗어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Check List 4의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체크	체크 항목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등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성립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불성립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① 청탁자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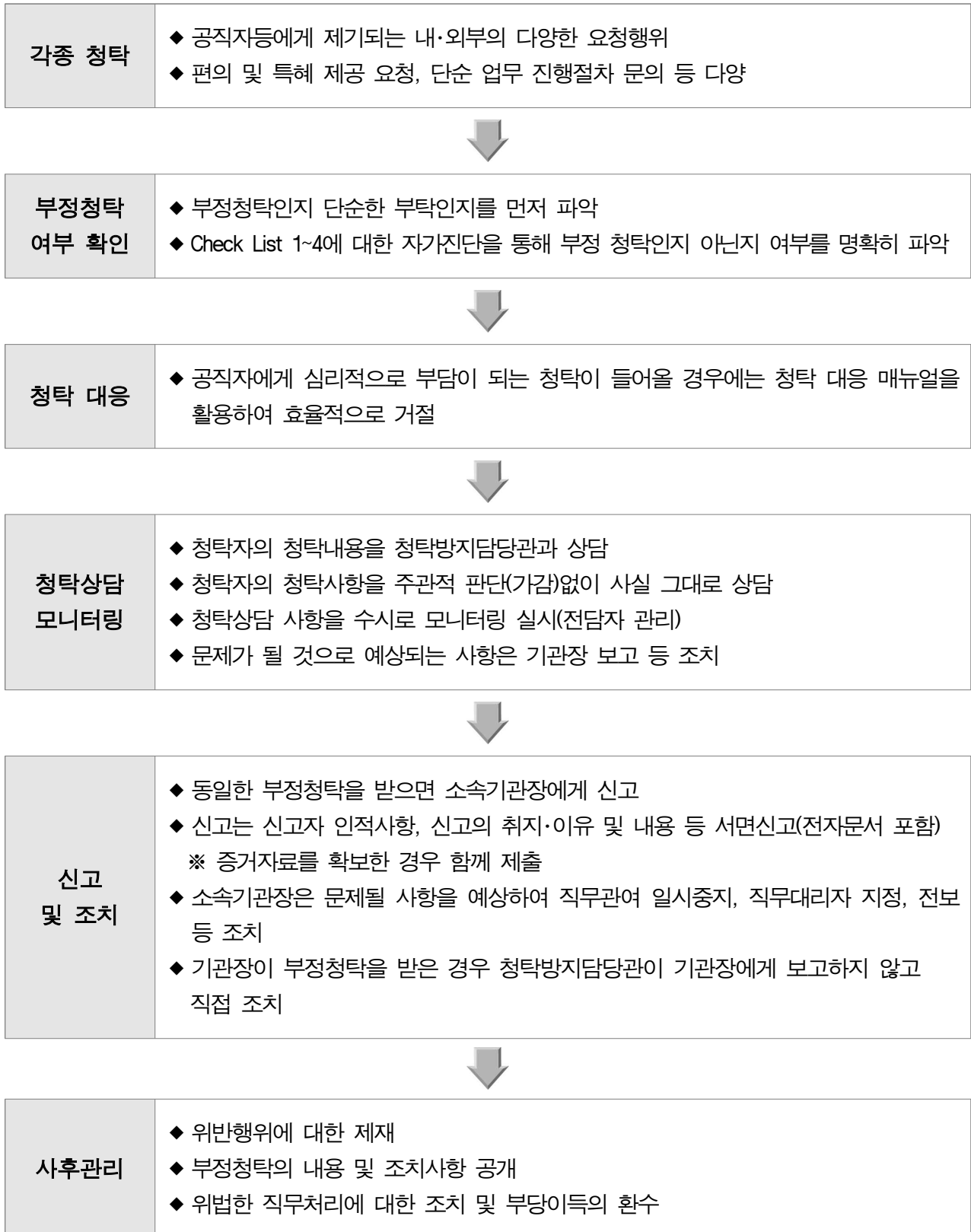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대응 기본 방향
 - ✓ 청탁의 대부분이 공직자등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명시적인 청탁요청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청탁의사표시가 주류
 -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 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② 구체적인 대응 예시

-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자와의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거절하여 부정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상·하급자 등을 핑계대거나 청탁사실의 공개 등을 들어 완곡하게 거절 필요
- 부정청탁 수용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들어서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또는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을 거절(상급자 등이나 하급자 등을 핑계로 거절)
- 청탁자와의 비공개적인 접촉 등 회피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 부정청탁 상담·신고 처리 절차 >



가. 부정청탁의 상담

- 공직자등은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공직자등이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공직자 보호
- 공공기관 내부 인트라넷 등에 직원들이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 상담' 코너 개설 운영(서식 1, 2 참조)
- 공직자등은 상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요청
 - ※ 부정청탁 받는 즉시 상담을 하여 청탁자나 청탁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
- 청탁방지담당부서에서 관리, 별도의 전담자 지정 운영하고 지정된 자만 열람 가능
 - ※ 청탁방지담당관과 전 직원은 청탁사실 비밀 준수 의무 부과
-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관장에게 보고
-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이와 관련한 신고는 부정청탁 상담으로 간주하여 운영

나. 부정청탁의 신고

□ 공직자등의 신고(법 제7조제2항)

-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주 의

-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다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더라도 신고 필요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신고 필요

-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신고 사항(시행령 제3조) >

- 신고자의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
- 신고의 취지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별지 서식 제0호)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 신고사항은 공직자등의 신고 시 신고사항과 동일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칭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1)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시행령 제4조)

-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 사항(시행령 제4조)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 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 신고기관은 신고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신고기관은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 필요

(2)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시행령 제5조)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를 받은 날(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함

< 이첩기관(시행령 제5조제3항)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송부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 조사기관

-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 실시
-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
 - 조사기관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이송한 조사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를 이송하는 경우 신고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을 함께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이송한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 이송 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종결처리

- 신고기관은 다음의 경우 신고를 이첩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종결하고 종결 사실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

< 종결기준 >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등 결과의 통보(시행령 제8조)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보

< 통보 사항(시행령 제8조) >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위반행위의 기록·관리(시행령 제11조)

- 신고기관은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신고 및 확인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관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 및 신고 처리 통계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 및 신고 처리 통계,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시행령 제11조제4항, 제27조제2항)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8조)

-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일정한 조치 가능

구분	체크	조치	내용
조치 필요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 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	직무참여 일시중지	◆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	전보	◆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조치 불필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2)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공개 여부의 결정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
 - 과태료 부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부정청탁 예방 효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 (공개범위)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내용 등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 ※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공개범위를 위임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 (공개방법 및 공개기간)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공개 가능

< 부정청탁 홈페이지 공개 예시 >

부정청탁의 내용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등)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법 제7조제4항의 조치)	제재 (징계, 과태료, 형벌)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 위반 부정청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	< 직무수행 공직자등 > ▪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역 2년 (벌금 ○만원) < 부정청탁자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만원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만원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 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본인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자등(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은 모두가 해당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법 제16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직무수행 중에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도 가능

(2) 부당이득의 환수

- (개별 법률과의 관계)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 (환수사유)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과 수행한 직무 자체의 위법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능
 - 법 제5조, 제6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도 위법하나, 제8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환수대상)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권익위)

-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권익위)

-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규율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권익위)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 하나요? (권익위)

-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권익위)

☞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그 지시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권익위)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권익위)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함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권익위)

☞ 제3자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이상 제재대상에 해당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권익위)

☞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도 할 수 있나요? (권익위)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권익위)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권익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Q.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할 수 있나요? (권익위)

☞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권익위)

☞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권익위)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권익위)

☞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Q. 기사의 취지, 보도, 편집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나요? (권익위)

☞ 부정청탁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데,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청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Q.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 (매일경제)

☞ 아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Q.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매일경제)

☞ 그렇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된다.

Q.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는가? (매일경제)

☞ 그렇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Q.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 (매일경제)

☞ 부정청탁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Q.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OO방송에 취업하고자 했다. A 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 씨를 통해 OO방송 인사담당 국장 C 씨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면? (한경비즈니스)

☞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자인 B 씨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인 C 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부정청탁 신고 처리 관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권익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권익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권익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는 부정청탁에 대한 상담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처리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권익위)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권익위)

☞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음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권익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권익위)

☞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판결 등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의 공개기간은? (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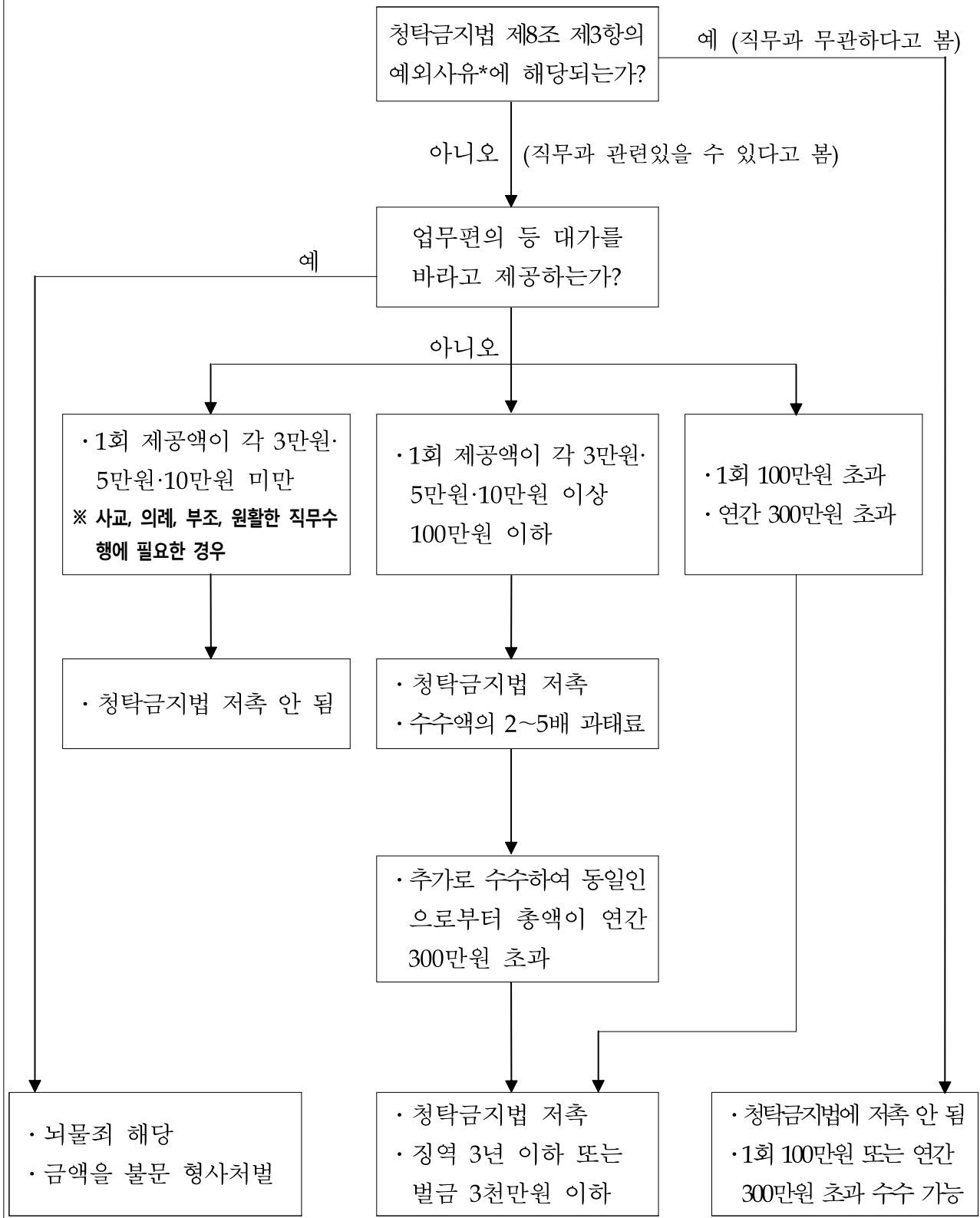
☞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함

IV. 금품등의 수수 금지

IV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수수 대상 여부 확인 절차]



1

선물 등 수수금지

가. 개요

< 수수 금지 선물 확인 절차 >



※ 선물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선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지 선물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판단해야 함

나. 선물 가액의 확인

- 선물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이 되므로 선물을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선물 가액을 확인
- 선물에 구매 영수증 등이 들어 있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 구매가 기준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실제 구입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
- 가액기준(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부분이 아닌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가액기준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함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도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예시) 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공직자등이 선물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탁 방지담당관과 상담

다. 선물 등 수수 금지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직접적 직무관련자 자가진단)

○ 'check list 1' 선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직자 및 관련 공직자
☐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직자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2를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2(일반적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 'check list 2' 선물 수수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 직무관련성을 판단(첨부 1 참고)

체크	체크 항목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



Check List 3(법상 허용되는 선물 자가진단)

- 'check list 3'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선물 수수가 가능(붙임 1 참조)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선물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	◆ 5만원 이하의 선물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선물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

※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check list 4 선물의 목적 자가진단 필요



Check List 4(선물의 목적 자가진단)

- 'Check List 4'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을 벗어난 선물인지 여부를 다음의 판단요인에 따라 확인

직무성 판단	◆ 직무의 종류·내용 - 직무 내용이 기계적이고 단순한 경우나 직무집행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상급자일수록 하급자보다 직무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범위가 좁아짐
-----------	--



친분관계 판단	◆ 개인적 친분관계 - 아무런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상 관계만 있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개인적 친분관계와 직무상 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가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선물 제공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교·의례 목적을 판단 -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거나 인허가 등 직무직접 관련성이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



상황성 판단	◆ 선물수수의 경위·시기 - 연말연시를 비롯한 각종 명절이나 생일 때 등에 제공된 선물은 다른 때 제공된 선물보다 사교·의례 목적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제공된 선물의 종류 - 제공된 선물의 종류가 내세워진 명목에 걸맞지 않으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



- ◆ 선물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선물임
- ◆ 선물 가액이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선물임
- ◆ 선물 가액이 5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에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선물임
- ◆ 선물 가액이 5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지만 사교·의례 등 목적을 벗어난 경우(check list 4) 수수가 금지되는 선물임
- ◆ 선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라. 선물 등 수수금지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Check List 2의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 일반적 직무관련성 >

체크	체크 항목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 법령상 일반적·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면 충분하고 현실적·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 지휘감독자의 소속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

☐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 ※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관리 직무
-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
 - ※ 자기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한 경우, 동료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의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
 - ※ 관례(예시)
 - 교도관을 보조하여 사실상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락이나 담배 반입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87도1463)

-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해 온 경매사건 관여 주사보가 경락 허부 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84도2625)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최종적·독자적 결정권은 없지만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직무

※ 개인택시 면허 결정에 중간결재자인 시의 개인택시 면허사무 담당부서 과장이 면허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87도1472 판결)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다만, 직무권한자의 행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음

※ 공판참여주사가 형량 감경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양형은 공판참여주사의 일반적 직무도 아니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아님(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마.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바. 선물의 상담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받는 경우 수수 금지 선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상담처리부(별지 서식 제o호)에 상담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선물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 공직자등은 상담 결과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인도해야 함
- 공직자등이 받은 선물이 수수 금지 선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 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도 사후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능

사. 선물의 신고

□ 공직자등의 신고(법 제9조제1항)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선물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전자 문서 포함) 작성·제출
 -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신고 사항(시행령 제14조) >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
- 신고의 취지 및 이유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의 반환 여부 및 그 밖에 사항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공직자등은 선물을 받은 경우 외에도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함
 - 선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지체 없이 신고
 -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
-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기관에 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작성·제출(별지 서식 제0호)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 필요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기관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 사항(시행령 제14조) >

- 신고자의 인적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및 그 밖에 사항,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 신고의 보완 및 처리, 신고사항과 확인사항의 기록·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규정을 준용(시행령 제15조제3항)

아. 선물의 반환

□ 개요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선물 전부를 반환
 -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과 가액기준(5만원 이하)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선물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예)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2 음식물 등 수수 금지

가. 개요

< 수수 금지 음식물 확인 절차도 >



※ 음식물 수수 여부는 Check List 1~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음식물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음식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지 음식물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판단해야 함

나. 음식물 가액의 확인

- 음식물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의 기준(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되므로 음식물을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음식물 가액을 확인

-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해당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에 해당
 -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 의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내에서는 제공자가, 초과 부분은 공직자등이 각자 계산 가능**
- ☞ 예를 들어, 직무관련자와 5만원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 함께 식사를 한 후 **제공자가 이미 결제를 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한 음식물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과 가액기준(3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사유가 성립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공직자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하여 신고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다. 음식물 등 수수 금지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직접적 직무관련자 자가진단)

○ 'check list 1'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2를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2(일반적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 'check list 2' 음식물 수수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일반적 직무관련성을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



Check List 3(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 'check list 3'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식물 수수가 가능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3만원 이하의 음식물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음식물의 목적 자가진단 필요



Check List 4(음식물의 목적 자가진단)

- 'Check List 4'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해당하여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다음의 판단요인에 따라 확인

직무성 판단	◆ 직무의 종류·내용 - 직무 내용이 기계적이고 단순한 경우나 직무집행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사고·의례 목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상급자일수록 하급자보다 직무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사고·의례 목적의 인정범위가 좁아짐
-------------------	--



친분관계 판단	◆ 개인적 친분관계 - 아무런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상 관계만 있는 경우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개인적 친분관계와 직무상 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가 제 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식사 제공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례 목적을 판단 -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거나 인허가 등 직무 직접 관련성이 예상되는 경우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는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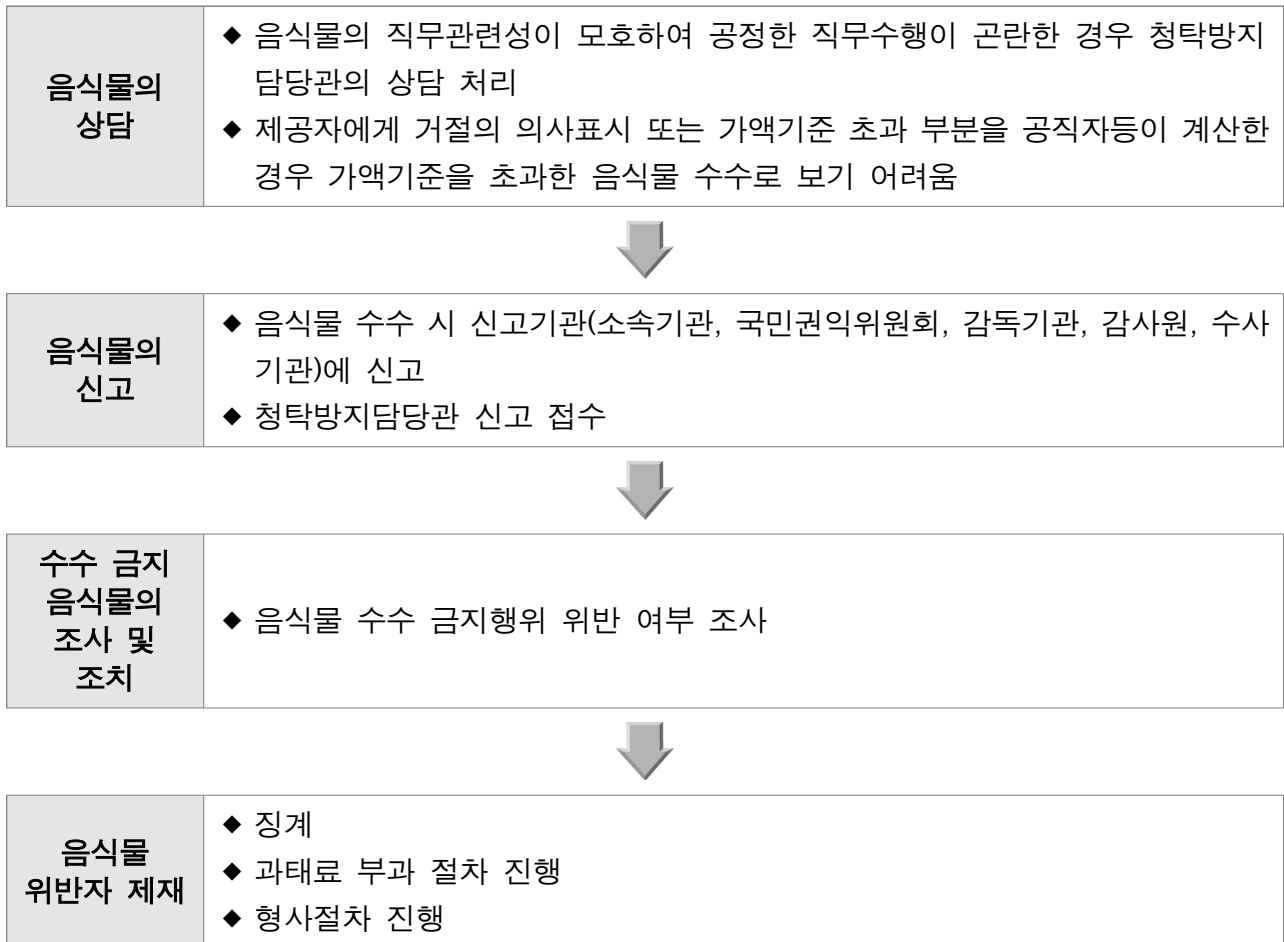
상황성 판단	◆ 음식물 수수의 경위·시기 - 연말연시를 비롯한 각종 명절이나 생일 때 등에 제공된 음식물은 다른 때 제공된 음식물보다 사고·의례 목적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제공된 음식물의 종류 - 제공된 음식물의 종류가 내세워진 명목에 걸맞지 않으면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



- ◆ 음식물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음식물임
- ◆ 음식물 가액이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며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음식물임
- ◆ 음식물 가액이 3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에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음식물임
- ◆ 음식물 가액이 3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지만 사교·의례 등 목적을 벗어난 경우(check list 4) 수수가 금지되는 음식물임
- ◆ 음식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라.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 절차도



□ 음식물의 상담

- 공직자 등이 음식물을 받는 경우 수수 금지 음식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 직무관련성,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 등

-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상담처리부(별지 서식 제o호)에 상담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 음식물의 신고

- 공직자등은 상담 결과 수수 금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별지 서식 제o호)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3 경조사비 등 수수 금지

가. 개요

< 수수 금지 경조사비 확인 절차도 >



※ 경조사비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를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경조사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지 경조사비인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판단해야 함

나. 경조사 범위 및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사망에 한정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경조사비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경조사비 가액을 확인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이 아니라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과 가액기준(3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사유가 성립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경조사비는 선물, 음식물과 함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물이나 음식물과 달리 경조사비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조사비의 경우 즉시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리스트 등을 확인하여 직무관련성과 가액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다. 경조사비 등 수수 금지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직접적 직무관련자 자가진단)

○ check list 1'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2를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2(일반적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 check list 2' 경조사비 수수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일반적 직무관련성을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가 허용됨



Check List 3(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 check list 3'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

※ 위의 항목에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경조사비의 목적 자가진단 필요



Check List 4[경조사비의 목적 자가진단]

-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부조 목적을 벗어난 경조사비인지 여부를 다음의 판단요인에 따라 확인

직무성 판단	◆ 직무의 종류·내용 - 직무 내용이 기계적이고 단순한 경우나 직무집행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상급자일수록 하급자보다 직무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범위가 좁아짐
친분관계 판단	◆ 개인적 친분관계 - 아무런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상 관계만 있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개인적 친분관계와 직무상 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가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경조사비 제공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교·의례 목적을 판단 -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거나 인허가 등 직무 직접 관련성이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조사비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상황성 판단	◆ 경조사비 수수의 경위·시기



- ◆ 경조사비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경조사비임
- ◆ 경조사비 가액이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이고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며 check list 3의 항목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경조사비임
- ◆ 경조사비 가액이 10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에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경조사비임
- ◆ 경조사비 가액이 10만원 이하로 check list 1 또는 2의 항목 중 체크(✓)가 1개 이상이고, check list 3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지만 사고·의례 등 목적을 벗어난 경우(check list 4) 수수가 금지되는 경조사비임
- ◆ 경조사비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라.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 절차도



□ 경조사비의 상담

- 공직자 등이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수수 금지 경조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상담처리부(별지 서식 제o호)에 상담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경조사비의 자진 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 경조사비의 신고

- 공직자등은 상담 결과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인도해야 함
 - 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별지 서식 제o호)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경조사비의 반환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이 아니라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을 반환
 - 제2호의 예외사유는 가액기준(10만원 이하)과 목적 요건(부조)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면 목적 요건도 부정되어 가액기준 내의 부분만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
 -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부조)과 가액기준(1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경조사비가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 반환·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 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경조사비의 처리

-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경조사비를 인도
 - 신고기관은 경조사비를 인도한 공직자등에게 인도확인서를 교부
-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조사비의 처리 방법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 받은 경조사비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기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세입조치

-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한 자에게 반환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권익위)

-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권익위)

-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를 입증할 수 있으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권익위)

- ☞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권익위)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위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권익위)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권익위)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됨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권익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권익위)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권익위)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권익위)

☞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Q. 미혼의 공직자등인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권익위)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되면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가능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권익위)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권익위)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익위)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다만,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 신고한 공직자는 처벌되지 않음)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권익위)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권익위)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시행령안 별표1 제3호)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

Q.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권익위)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Q.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권익위)

☞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권익위)

☞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사별 1명)과 공직자1명 등 총11명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권익위)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

Q.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권익위)

☞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 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권익위)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권익위)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권익위)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

Q.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권익위)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

Q.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음 금액)를 지불해야 함

Q.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 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각각 10만원을 안 넘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일까? (매일경제)

☞ 화환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쳐서 12만원으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Q.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나? (매일경제)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과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채무상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나 경품 추첨을 통해 획득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나 숙박, 교통비 등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비롯해 숙박권, 회원권, 공연 티켓,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Q. 처벌을 받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은 얼마인가? (매일경제)

☞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각자 자기 몫의 돈을 냈다면 관계없다.

Q.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10만원 조의금을 냈다면? (매일경제)

☞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도 많다.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Q.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매일경제)

☞ 법 위반이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Q.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가 청년들을 위한 외부 행사에 초청됐다. 행사 강연료가 200만원인데 청탁금지법에 걸릴까? (매일경제)

☞ 스타 PD를 행사에 초청하고 싶은 주관 측이 몸값을 높게 부르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언론사로 분류되는 지상파 방송사 직원인 만큼 강연료 상한은 100만원이다.

Q.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 (매일경제)

☞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한해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처벌되는가? (매일경제)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Q.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 (매일경제)

☞ 없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 식사 등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매일경제)

☞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식사에 제3자로 초대받았는데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것을 몰랐다면 괜찮나? (매일경제)

☞ 그렇다.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Q.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대상인가? (매일경제)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친족(민법에 제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는? (매일경제)

☞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 (매일경제)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공직자 등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매일경제)

☞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된다.

Q. 공무원 등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인가? (매일경제)

☞ 아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매일경제)

☞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Q.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도 받으면 안 되는가? (매일경제)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일경제)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허용된다.

Q. 제한되는 '금품 등의' 는 무엇을 말하나? (매일경제)

☞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한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Q. 가액기준(3·5·10) 이내면 무조건 괜찮나? (매일경제)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금품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나? (매일경제)

☞ 그렇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Q.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나 출장 등에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처벌되나? (매일경제)

☞ 그렇지 않다.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과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 접대·향응과 교통, 숙박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8조 제3항)

Q.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아서도 안 되나? (매일경제)

☞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단,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고, 고액일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Q.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경비즈니스)

☞ 금전·유가증권·부동산·초대권·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또한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Q.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적용하나? (한경비즈니스)

☞ 그렇다.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한다.

Q.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 (한경비즈니스)

☞ 술·음료수도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Q.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한경비즈니스)

☞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분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한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Q.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 문제가 없나? (한경비즈니스)

☞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Q. 제3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가령 A 공무원이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다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씨를 불러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했다. 세 사람이 각각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B 직원이 이를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 (한경비즈니스)

☞ 그렇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비에 포함시킨다. A 공무원은 총 4만원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Q.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업 홍보물 (다이어리 · USB · 필기구 등)을 받았다.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 (한경비지니스)

☞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청탁금지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Q. 기념품 혹은 홍보 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경비지니스)

☞ 해당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Q.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한경비지니스)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한경비지니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Q.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선물 기준을 적용하나, 경조사비 기준을 적용하나? (한경비지니스)

☞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조사비에는 화환 ·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값이 모두 포함된다.

Q. 중앙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냈다면 A사무관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한경비즈니스)

☞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Q. 정부 산하단체 자재관리과에 근무하는 A 씨와 납품업체 B씨가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9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이후 4800원짜리 커피도 마셨다. 계산은 모두 B씨가 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한경비즈니스)

☞ 청탁금지법이 정해 놓은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 3만원이 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식사비인 2만9000원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커피 값 4800원이 식사비에 포함돼 총 3만38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식사와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Q.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와 공무원이 모처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고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한경비즈니스)

☞ 이때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이 결정된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냐 아니면 업무와의 관계성이 있는 공적 관계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식사 대접 비용 5만원은 상한선 3만원이 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서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Q. 공공 기관에서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한경비즈니스)

☞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Q. 공무원의 경조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10만원짜리 화환(조화)을 보내고 경조비 10만원을 보냈다면? (한경비즈니스)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화환 역시 금액으로 환산돼 경조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Q. 정부 부처 과장이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담당 기관에서 200만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경비즈니스)

☞ 배우자가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해당 공직자가 입증하려면 제3자가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Q.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한경비즈니스)

☞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골프채)을 공직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 배우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Q. 공무원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한경비즈니스)

☞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Q.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낚시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한경비즈니스)

☞ 처벌 대상이다. 시행령에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즉시’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해명과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Q. 함께 동호회 모임을 하는 변호사와 사립학교 교사, 기업인, 기자 4명이 친목 골프를 했다. 280만원의 비용을 변호사가 모두 계산했다면? (한경비즈니스)

☞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친목 목적이었다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 혼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금품 수수액은 70만원이다. 청탁 금지법에서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 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권익위)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권익위)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직자가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Q. 중앙정부 부처 A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C협회 직원으로부터 과일 박스가 A부서로 배송되어 온 경우? (권익위)

☞ 선물의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렵고 누구에게 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처리해야

Q.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고·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권익위)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

Q.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권익위)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Q.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익위)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Q.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권익위)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Q.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괜찮나? (매일경제)

☞ 그렇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일경제)

☞ 그렇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나? (한경비즈니스)

☞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을 때에만 액수에 따라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 적용의 틀은 배우자와 공직자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Q. 금품 수수 등의 형사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경비즈니스)

☞ 공직자 등이 1회에 제공받는 음식물(선물 또는 경조사비)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과태료 부과 대상)를 연간 300만원어치 넘게 제공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Q.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 (한경비즈니스)

☞ 청탁금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 있다.

▷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이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Q. 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한경비즈니스)

☞ 정무위원회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V.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나. 사전 신고 절차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사전 신고 사항(시행령 제10조제1항) >

-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 외부강의등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주 의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

☞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액수나 강의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사전 신고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함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2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내 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님

(2) 사례금 상한액

-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는 1건당) 상한액을 설정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들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함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기고의 경우 직무 관련인지 공무 관련인지를 불문하고 상한액을 1건당 100만원으로 규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언론사 임직원의 소속기관 여비 규정에 따른 범우위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제외되나, 소속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이미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두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

< 신고 사항(시행령 제11조제1항) >

- 제10조제1항의 사전 신고 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가능

(2) 소속기관장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3 위반에 대한 제재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

구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징계처분 대상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이 법(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과사례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 의무는 불이행한 경우 이 법(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초과사례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

-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 법(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 부과 대상

-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권익위)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Q. 휴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권익위)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권익위)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권익위)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권익위)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권익위)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권익위)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권익위)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권익위)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횡수제한이 있음(월 3회 6시간)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권익위)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권익위)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참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 2단 비교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 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질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다음 각 호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⑥ 공직자들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 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 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 (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 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다음 각 호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신고자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 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 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다음 각 호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 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 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3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하야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들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벌금에 처한다. -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부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 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table data-bbox="823 927 1426 1308"> <tr> <th>구분</th><th>가액 범위</th></tr> <tr> <td>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td><td>3만원</td></tr> <tr> <td>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td>10만 원</td></tr> <tr> <td>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 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 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td>5만원</td></tr> </table>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 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 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 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 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u>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u>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table><tr><td>구분</td><td>장관급 이상</td><td>차관급</td><td>4급 이상</td><td>5급 이하</td></tr><tr><td>상한액</td><td>50만원</td><td>40만원</td><td>30만원</td><td>20만원</td></tr></table>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table><tr><td>구분</td><td>기관장</td><td>임원</td><td>그 외 직원</td></tr><tr><td>상한액</td><td>40만원</td><td>30만원</td><td>20만원</td></tr></table>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 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 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등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 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다운받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

초판인쇄 2016.9

초판발행 2016.9

발행인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획 반상권 / 운영지원과장

편집 박강욱, 안광일, 신우석

발행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 02)2110-1227